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55,267,000	16,658,010
일반회계	546,000,000	16,380,000
특별회계	9,267,000	278,010
기타특별회계	9,267,000	278,0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77,000	23,310
주차장사업특별회계	8,330,000	249,900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60,000	4,8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31,118,513천원으로 한다.
(일반예비비 4,000,000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,118,513천원)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한다.